

청주시 시립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 규정

[시행 2024.03.15]
(일부개정) 2024.03.15 훈령 제242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청주시립도서관
관리책임전화번호 : 043-201-4083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실정에 맞는 책이음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책이음 서비스를 도입한 참여도서관 회원 중에서 청주시 공공도서관(이하 "자관"이라 한다)을 이용하는 책이음 회원에 한해 적용한다.

제3조(회원자격)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자는 책이음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.

1.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2. 청주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
3. 청주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
4. 타 도서관 책이음 회원인 자
5.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자 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
제4조(회원의 의무) ① 책이음 회원은 개인 인적사항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책이음 도서대출증을 분실하였을 경우,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책이음 회원이 책이음 도서대출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책이음 회원에게 있다.

제5조(회원가입 및 이용절차) ① 책이음 회원은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 및 책이음 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, 책이음 도서대출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.

②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한 후 다른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정보 반입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회원 자격을 가진다.

③ 청주시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관 홈페이지에서 웹 회원으로 가입한 후 책이음 회원으로 전환하고, 자관을 방문하여 책이음 도서 대출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. 단, 다른 지역과 소속 참여도서관의 대출현황 및 이력 정보 등을 확인하려면 책이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웹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
④ 14세 미만 이용자는 본인인증 및 책이음 회원 등록절차 시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, 책이음 도서대출증 발급 시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4.3.15.>

⑤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가 청주에 재직 또는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 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⑥ 도서 대출증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청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.

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 동의, 본인인증 및 확인 방식은 자관 회원관리 규정에 준한다.

⑧ 책이음 회원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제6조(대출 및 반납) ① 대출은 본인에 한하며, 반드시 책이음 도서대출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개별 자관 대출권수는 10권, 참여도서관 전체 대출권수는 30권으로 한다. <개정 2021.4.9.>

③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로 하며,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.

④ 대출기간은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, 다른 회원이 대출예약한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.

⑤ 청주시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 한 해, 자관에서 대출한 자료의 대출연장과 예약을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, 전자책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.

⑥ 타 지역 또는 타 소속 참여도서관을 처음 이용할 때는 책이음 도서대출증을 제시하여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⑦ 책이음 회원의 개인정보 및 도서관리프로그램상에 기록된 정보(대출이력, 연체여부 등)는 참여 도서관에서 공유될 수 있다.

⑧ 타 지역 또는 타 소속 참여도서관에서 대출한 자료에 관한 것은 각 참여도서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7조(회원 자격 상실) 책이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된다.

1. 자료의 분실, 훼손, 장기 연체(1년 이상)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
2.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
3. 본인이 책이음 회원 탈퇴를 원할 경우. 단, 대출정지 기간에는 탈퇴할 수 없다.
4. 그 밖에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

제8조(회원 재가입) ① 자격상실 사유가 소멸된 책이음 회원에 한해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, 참여도서관에서 재가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책이음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 책이음 회원 자격상실 사유가 책이음 회원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책이음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.

제9조(회원탈퇴) ① 이용자 탈퇴 요청 시 연체 등의 다른 사유가 없다면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책이음 회원에서 탈퇴 시 자관 회원으로 전환은 가능하다.

제10조(변상) 대출 자료의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자관의 변상 규정에 따른다.

부칙(2018.8.10. 훈령 제151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.4.9. 훈령 제190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4.3.15. 훈령 제242호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